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1. 23 선고 2022가단396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

변론 종결 2022. 11. 9.

판결 선고 2022. 11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,078,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25.부터 2022. 11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/10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7,337,5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원고는 어묵, 햄 등의 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'D'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.
- 원고와 피고는 2018. 4. 30.경 원고가 위 마트에 3년간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.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입점지원비 1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 또한 원고는 위 마트 내의 원고 물품 판매대를 관리하는 여직원의 급여도 부담하였다.
-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약정기간 36개월 중 29개월을 채운 상태에서 중단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3호증, 을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- ① 원고는 '원고 물품 월 3,000만 원 이상의 매출'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입점지원비 1,000만 원을 지급하고, 여직원 급여 2,620만 원도 부담하였다. 그러나 월 3,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다. 또한, 피고는 약정기간 3년을 채우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점지원금 1,000만 원과 여직원 급여 2,6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수금 1,134,529원이 남아 있으므로, 피고는 위 미수금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- (1) 입점지원비와 여직원 급여에 관하여 본다.

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약정서(갑1호증)에는 '매월 3,000만 원 이상 판매'를 조건으로 원고가 입점지원비와 여직원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(아래 그림 참조).

DOCUMENT: 거래약정서 수기 기재 부분(이미지 생략)

그러나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약정서(을1호증의 1 내지 14)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, 갑1호증의 위 수기 기재 부분에 피고의 도장은 따로 찍혀 있지 아니한 점(위 그림에 찍힌 피고의

도장은 해당 페이지의 간인일 뿐이다) 및 거래약정 당시 거래약정서 원본을 2부 만들어 원고와 피고가 하나씩 나누어가졌고, 당시 피고가 받은 거래약정서에는 위 수기 부분의 기재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기 부분은 거래약정이 체결된 후에 원고가 임의로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,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수기 부분의 내용과 같은 매출 조건 부과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월 3,000만 원 이상 매출 발생 조건 관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만, 입점지원금 자체가 3년간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고,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기로 한 점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, 피고가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.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취지로 포함하는 것으로 설행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점지원비 중 남은 7개월(= 36개월 - 29개월)에 해당하는 1,944,444원(= 1,000만 원 * 7/36)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(2) 미수금에 관하여 본다.

갑2호증의 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원고가 3,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1,134,529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와 달리 원고가 위 3,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의 미수금이 26,756,946원임을 전제로 3,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수금은 물론 입점지원비 반환금 1,944,444원까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소결

피고는 원고에게 3,078,973원(= 입점지원비 반환금 1,944,444원 + 미수금 1,134,529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날인 2022. 6. 25.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11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

기각한다.

판사에혁준